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자 포함〉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2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2 |
| 2. 검토의견 .....                                                           | 3 |
| [참고] 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자를 포함하는 국가<br>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주호의의원 대표발의) .... | 7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2.
3. 회부연월일 : 2025. 12. 1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제6의3제라목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br>1. ~ 6의2. (생략)<br>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가. ~ 다. (생략)<br><u>&lt;신설&gt;</u><br>6의4. ~ 8. (생략) | 제33조(결격사유) -----<br>-----<br>-----.<br>1. ~ 6의2. (현행과 같음)<br>6의3. -----<br>-----<br>-----<br>-----<br>가. ~ 다. (현행과 같음)<br>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br>6의4. ~ 8. (현행과 같음) |
| 부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죄를 지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2. 검토의견

현행법 제33조<sup>1)</sup>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기간을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같은 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서 특정 범죄에 한정하여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6호의3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sup>2)</s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지방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sup>3)</sup>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sup>4)</sup>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 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31조제6호의3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72, 2024.12.31.)」이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2025.11.27.)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달성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 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
| 문 의 처        |
| 02)6788-5342 |

**참고**

**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자를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주호의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7172 |
|----------|------|

발의연월일 : 2024. 12. 31.

발 의 자 : 주호영 · 고동진 · 강대식  
권영세 · 서명옥 · 조은희  
박상웅 · 박준태 · 김장겸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특정함(안 제33조제6호의4).

나.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안 제69조제1호 단서).

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가 당연퇴직 사유에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3조 신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 또는”을 “성폭력범죄,”로, “성범죄”를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69조제1호 단서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br>1. ~ 6의2. (생략)<br>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가. ~ 다. (생략)<br><u>&lt;신설&gt;</u><br><br>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u>성범죄</u> 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3조(결격사유) -----<br>-----<br>-----<br>-----<br>1. ~ 6의2. (현행과 같음)<br>6의3. -----<br>-----<br>-----<br>-----<br>가. ~ 다. (현행과 같음)<br>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br>6의4. -----<br>-----<br>----- <u>성폭력범죄,</u> -----<br>-----<br>-- <u>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u> ----- |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

\_\_\_\_\_

\_\_\_\_\_

\_\_\_\_\_

제69조(당연퇴직) -----  
-----  
-----.

1.

.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2. (생략)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 2. (현행과 같음)